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24일(토)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2018. 11. 23 (금) 13:20 ~ 14:50

## 〈세션1〉 공유부와 한국의 기본소득

사회: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발표1: 도시의 공유지와 기본소득  
곽노완 (한신대 공유경제팀)

발표2: 부동산소득 추산과 국토보유세, 그리고 기본소득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발표3: 비시장재 가치 측면에서 바라본  
공유부(common wealth)와 기본소득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시장재 가치 측면에서 바라본 공유부(common wealth)와 기본소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영성

## I. Common Wealth(공유부)는 무엇을 말하는가?

○ 共有인가 公有인가?

- 共有 : 개인이 아닌 공동이 소유하는 것(이용 포함)

• 共有財(common pool resources) : 공공재 가운데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

• 公共財(public goods) :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 경합성이 있으면 공유재(예 : 무료도로), 없으면 공공재  
共有財는 민간부문 생산·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準공공재 취급

- 公有 : 개인, 공동 상관없이 민간이 소유하지 않는 상태 또는 공공 내지 만인이 소유/이용하는 상태

• 하딘의 公有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 ‘Common Wealth’에서 ‘Common’은 共有이든 公有이든 상관없이 소유의 ‘본질적 권리’ 측면에서 의미를 규정 (사유 현상 자체는 인정)

• 두 가지로 구분 가능

① 특정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상태(公有)

② 모두가 소유하는 상태(共有)

○ 富(wealth) : 특정한 경제주체에 딸린 재화의 총계

- 재산(property), 자원(resources), 토지(land), 빅데이터(big data) etc.

## 소유 관련 관점 <우파 자유지상주의 vs. 좌파 자유지상주의>

### [공통 인식]

- 모든 개인에게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이 있거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자발적 행동이 아니고서는 타인에 대한 서비스의 의무가 없음

### [차이 인식]

- 우파 관점 : 누구도 자연과 자연자원, 특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 다른 구성원의 사전 동의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지불 없이 자연·자연자원·토지에 대해 처음으로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이를 사적으로 전유할 수 있음
- 좌파 관점 : 자연상태의 자연은 모두가 소유하는 공유재이며, 사적 전유는 공공이 민주적 경로로 합의하고 보상받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

출처: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가이 스탠딩 지음, 안효상 옮김, 창비, 2017, pp.48-49.

## II. Common Wealth(공유부)의 대상 범위

### ○ 기본소득의 재원 근거로서 Common Wealth(공유부)의 주요 대상

- 기존 논의 전통에서 자연자원(환경, 생태), 특히 **토지(land)**를 중시
  - 헨리 조지...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동유산이며, 모든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지대소득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진보와 빈곤」)
  - 그는 토지 소유 뿐 아니라 다른 **자연자원**이나 **특허권(지적재산)** 소유에서 막대한 **부가** 창출되고 지대소득이 발생한다고도 인식
- IT 기술발전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최근 **빅데이터(big data)**에도 초점

※ 토지(land)와 빅데이터(big data)는 천부(상속)의 자원이거나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생산한 자원으로 본질적 권리 측면에서 특정 누군가가 전유할 수 없거나(公有),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는(共有) 富 의미

- 포괄적으로 지대소득(각종 경제지대) 발생원을 공유부로 인식

- 지대소득 산출하는 富: 유형자산(토지나 물리적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금융자산 및 지적자산..저작권, 특허권, 브랜드 등)도 포함
- 무형자산.. 사회(규제)가 소득을 만들어 주고 일반인은 리스크 감수
- 대다수가 모두에게 속한 공유재의 상업적 약탈, 그리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의 상업화와 사영화에서 나오는 지대소득으로 부를 이룸

- Common Wealth(공유부)의 '사적 소유'에 대한 제재로서 세금 부과  
의 정당성 및 이의 기본소득(사회배당) 재원으로 활용 논의 활발

- 헨리 조지... 모든 개인 토지에 토지임대료(단일세 single tax) 부과를 주장(「진보와 빈곤」). 이는 이후 토지세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장들의 추론 근거로 작용
- 지대소득의 나눔 = 기본소득(사회배당, 시민배당)

○ 공유부 대상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환경자산'과 '사회적경제(가치)'도 논의 확장 가능 (기본소득 재원 논거)

- 환경자산(environmental asset\_ stock & flow), 즉 자연, 생태계 등과 사회적경제(가치)는 공공선을 창출하는 공유부로서 작용을 하는데, 지대소득을 발생시키는 상업적 약탈 내지 사영화의 대상이 되기도 함

- 하지만 '공유부' 및 '지대소득' 관점만으로 해석하기엔 뭔가 부족하고 어색한 느낌이 드는 대상이기도 함

- 이들은 다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conceptual framework이 필요

### III. 비시장 가치재로서 자연 및 사회적경제\_ 공유부 및 지대소득

#### 1. 공유부 및 지대소득 대상으로서 기본소득 재원조달에 부합한 측면

- 자연 및 사회적경제는 경제학적으로 비시장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재화) 또는 비시장 재산(富)에 해당
  - 비시장재는 경제적 측면에서 분명 그 가치가 존재하나 시장거래 대상이 아니므로 시장에서 가격(가치)이 존재하지 않은 재화
    - 비시장재는 가격이 없는 만큼 시장경제 상황에서 주인이 없는 대상
  - 비시장재는 특히 공유부이면서 지대소득화가 가능한 대상
    - 만인에게 공공의 이익으로서 경제적 혜택(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만인이 누리는 만인의 재산(富)의 역할 함
    - 지대소득은 주어진 것(천부, 상속) 내지는 사회의 인위적 창출로서 불로소득 또는 노력과 기여한 바가 없이 얻는 소득인 바, 소득이라는 형태로 재화나 서비스 등이 일방적으로, 달리 말해 대가지불과 같은 쌍방향 주고받기가 내재화 되지 않은 채 이전되는 것을 의미 (비시장재 가치 이전으로서 '외부효과'로 해석 가능)  
⇒ ex. 외부효과\_시장거래가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경제효과
- 자연(환경, 생태계)은 공유재의 일종으로서 '공유부' 대상이 가능
  - 자연은 지구 생명계(biosphere) 차원에서 생태계(독립)와 경제계(종속)의 외부성(externality) 관계 대상 (cf. 부모-자식 관계로 비유)
    - 생태계는 경제계의 생명줄.... 경제계 존립 근거 및 유형자산의 원천
  - 자연(생태계)는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공유부의 특성을 지님

- 만인에게 공공의 이익으로서 경제적 혜택(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만인이 누리는 만인의 재산(富)의 역할 함

### <자연의 사회적 편익>

범주		예
인간의 건강	사망위험성	암사망 위험 감소, 급성질환 사망위험 감소
	질병위험성	심혈관계 질환 감소, 호흡기계 질환 감소, 피부질환 감소 등
쾌적함		맛, 향기, 시각 등
생태적 편익	시장적 편익 (생태계가 제공하는 제품)	식량공급, 연료공급, 목재공급, 섬유공급, 모피 등 공급
	비시장적 편익 (휴양 및 미관)	휴양기회 제공(경관감상, 낚시, 배타기, 수영, 등산 등), 전망 제공
	간접적 편익 (생태계 보전)	기후완화,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침전물 저장, 표토보존, 양분순환, 야생동식물에 의한 수분, 생물다양성, 유전정보, 수질정화, 토양 비옥화, 병해충 관련 등

- 자연의 사회적 편익(가치) 측정이 실제 가능한지가 현실적으로 문제시

- 탄탄한 경제학 이론 토대 하에 다양한 기법이 발달되어 왔음

### <Total Value(Social Benefit)>

가치 유형 분류			측정기법
Use Values	Direct Use Values	Consumptive	시장분석 비용접근법 생산함수
		Non-consumptive	-
	Indirect use values		시장분석 비용접근법 HPM CVM
	Option Value		대체비용법 완화비용법 회피비용법 CVM
Non-use Values	Bequest value		CVM/CRM CE
	Altruist Value		
	Existence Value		
* 적용 가능하나 세심한 주의 요망 기법 ⇒			Benefit Transfer

○ 자연(생태계)/환경자산, 즉 ‘공유부’를 사익화를 통한 지대소득 대상으로 삼을 경우(규제 등에 의해) 이중 피해가 발생

- ① 공유부(환경의 사회적 편익)를 사익화 하면 공유부가 줄어들게 됨
- ②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함

**<자연의 규제 등을 통한 지대소득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

종류		내용
직접 비용	준수비용	자본비용
	규제비용	가동 및 유지비용
	사회적 후생 손실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및 행정 비용</li> <li>• 감시 및 보고 비용</li> <li>• 감독 및 이행 비용</li> <li>• 인허가 비용</li> </ul>
	이전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li> <li>• 기업파산</li> <li>• 타산업으로의 자원이동</li> <li>• 거래비용</li> <li>• 생산과정 변동에 따른 조정비용</li> </ul>
간접 비용		상품의 질, 생산성, 기술혁신, 시장상황 등의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 사회적 비용 측정은 별로 문제시 되지 않음(시장자료를 통해 해결)

○ 사회적경제(가치)는 자연이 아닌 인간이 이루는 사회에서 인간들 상호간의 삶의 작용을 통해 창출되고 있는 가치 내지 가치 있는 활동으로 사회의 공유부가 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가치)는 경제학적으로 사회 내 재화(서비스)의 일종으로 시장거래 차원에서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아 가격 내지 가치가 화폐적 표현으로 잘 측정되어 나타나지 않음

- 하지만 공공선을 창출하는 공유부로서 작용하며 시장경제를 보이지 않게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함 (예, 사회적 자본(신뢰) 등)

- 사회적 경제(가치)는 시장재와 결합한 형태(시장재화의 가격 속에서 가격하락 형태로 반영된 채)로 나타나기도 하며 시장재화와 분리되어 (시장재화의 가격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로서 존재하기도 함

○ 사회적가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사회적가치기본법(안)]

- 사회적가치기본법(안) 규정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시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향상
  -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실제 사회적 가치의 측정이 문제시 됨

- 그동안 제3섹터 영역의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으나 성과와 한계가 공존
- SROI의 경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의 사회적 편익’ 측정에 사용되는 CVM, CE 기법들로 적용을 확대해 갈 필요



### <제3섹터 영역의 사회적 가치 측정 주요 도구>

분류	평가도구	세부내용
회계	SROI	사회적 편익에 대한 화폐적 가치 비교
	Social Accounting	조직의 목적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컨설팅
전략경영	SE BSC	학습·성장, 내부 프로세스, 고객, 재무 관점
	SFP Dashboard	사회적기업 방식의 운영을 위한 내부적 관리 툴
보고서	Sigma Guideline	조직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효과를 관리 및 성취하기 위한 지침
	GRI Guideline	Social Accounting에 대한 외부 감사
	Social Audit	구체성, 완결성, 책임성에 대한 기술
	AA 1000(Series)	DIY 방식을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 설명
성과측정	Local Multiplier 3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를 이해하는 구조
	ABCD	협동조합의 원칙을 보기 위한 척도
	KSCPIs	환경적 활동을 관리하고 분석하는 도구
	Eco-mapping	조직에 의해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정도 측정
	Prove it	

자료: 최준규,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측정”, GRI Focus, 2018.9.20

## 2. 공유부 및 지대소득 대상으로서 기본소득 재원 조달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

- 자연(자원 개념 x)은 단순히 공유부 개념과 연결시키기엔 간단치 않은 면들이 내재함을 인식할 필요
  - 자연(환경, 생태계)은 자원/자산 관점에서 볼 경우 그 자체가 인간 중심으로 경제화 한 개념
  - 자연은 인간에게 공유부 대상이기도 하나 자연재해(자연질서의 항상성/복원성 원리 작용)로 나타날 경우 사정이 달라짐
    - 장기적으로 공유富로 작용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공유負로도 작용(단기적 측면에서)
    - 한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오염(pollution) 등은 공유부(비시장재 가치)의 사익화(지대소득화) 파생물로서 공유부 훼손체
  - 자연을 대상으로 포괄적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유부의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사회적경제(가치) 개념 속에서 해석할 필요
    - 위의 [사회적가치기본법(안) 규정]에서 정의하듯이 ‘사회적가치’에는

환경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포함

- 사회적경제(가치)는 개념적으로 긍정적 의미만을 전제할 경우, 공유부와 지대소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실에선 반드시 긍정적 의미만 지니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법은 없음
  -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이 사회적 약자를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만들 수도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가치)는 긍정적 의미만을 전제하는 협의의 개념과 긍정과 부정이 혼합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을 구분하여 다룰 필요
- 자연과 사회적경제는 어떤 면에서는 ‘지대소득’ 대상이 안 될 수 있음
  - 자연은 분명히 인간에 의해 지대소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방적 외부성만 지닌다고 볼 수 없음
    - 자연은 이미 그 자체 속에 인간이라는 생물을 포함하고 인간의 작용과 상호관계를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자연을 지대소득 대상화 하는 인간들조차도 암묵적으로 일정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음
    - 물론 지대소득을 얻는 행위 자체에서 생태계 파괴행위 등과 같은 지나친 작용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함 (탄소세-녹색배당 등의 대상)
  - 사회적경제는 비긍정적 의미를 지닌 경우를 배제한 다소 협의적 개념을 적용할 경우 공유부로서 작용하며, 이런 공유부를 사적으로 영리화(사익화)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시장경제 행위는 분명 ‘지대소득’ 추구 행위라 할 것임
    - 하지만 시장경제 행위 자체가 또는 시장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적

경제가 어떤 영역에서는 더 커질 수도 있음(예, 시장 상거래 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거래자 간 신뢰가 굳건해 지고 이것이 사회적 자본을 키우게 되는 현상)

- 이것이 사회적경제 가치를 지대소득적 측면에서 사용하는 자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음(비록 의도하지 않더라도)
  - 이는 암묵적인 형태이지만 사회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에 해당함
- 자연과 사회적경제는 현실에서 비시장 외부성이 시장경제와 연동되는 측면(영역)도 존재하므로 이들 간에 엄밀한 개념적 구분 필요
- 자연과 사회적경제의 경우 탄소세, 사회적가치세 등 부과 및 이의 기본소득화(사회배당, 녹색배당) 논거 확보에 좀더 세심한 고찰이 필요

#### IV. 결론

- 공유부 및 지대소득 대상 그리고 기본소득 재원조달 근거로서 ‘자연’ 과 ‘사회적경제’를 포함하여 다룰 필요가 있음
- 자연은 그동안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기본소득론에서 다루어졌던 주제 였으나 자연의 생태계적 속성까지 반영한 논의는 부족해던 듯함
  - 반면, 사회적경제는 기본소득론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로 보임
  - 비시장가치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볼 경우 이들, 즉 자연과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편익(가치)을 지닌다 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공유부와 지대소득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보임
  - 다만 자연과 사회적경제는 그 속성상 공유부 및 지대소득 대상으로 취급하기에 지극히 일면적이다 하더라도 부적합한 측면도 있으므로 개념을 적용하는데 구분이 필요함
  - 특히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논거로 사용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요함